



교육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업무 안내(학교 통학·통근차량 등 운행유의)

1. 관련 -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-4635(2018.12.31) "비상저감조치 확대 시행에 따른 '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' 시행지침 송부"
2.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이 시행되어 공공기관 차량 2부제, 노후차량 운행제한(시·도 조례에 의거), 관련 사업장·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등 **비상저감조치가 확대 적용**됩니다.
3.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, 각 대학교는 환경부의 「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」과 해당 시·도에서 작성하는 비상저감조치 실무매뉴얼에 근거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 - ※ 붙임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경우, 학교안전정보센터 공지사항(www.schoolsafe.kr)에서 「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」(환경부 배포) 다운로드

<비상저감조치 주요내용 - 국·공립대학교>

- ① 공공기관 차량 2부제 : 관용차량 및 직원차량 2부제 준수 철저
 - ※ 홀수일에 끝번호 홀수번 차량 운행, 짝수일에 끝번호 짝수번 차량 운행
- ② 노후차량 운행제한 :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차량(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)
 -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차량(예외 등 세부사항) 및 단속 시작 시기 등이 시·도마다 상이하므로 **반드시 시·도에 관련 계획·세부사항 문의 및 업무협조 철저**
 - ※ 단속 시작시기(가스저감장치 설치신청 시 미단속) : 서울, 인천(2.15 예정), 경기(3.5 예정)
 - 특히 각 대학교는, **통근버스, 통학차량, 관용차량 등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확인**(emissiongrade.mecar.or.kr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입력 후 등급 확인)
 -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할 경우, 시·도에서 안내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(지원금) 신청, 차량 교체 등 후속조치
 - ※ ②와 관련,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, **운행시 과태료가 부과**될 수 있음
- ③ 사업장·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: 사전 제출한 사업장·공사장 현황에 의거하여, 시·도 지시에 따라 사업장·공사장의 운영시간 조정
- ④ 각 대학은 시·도 안내에 따라 10일 이내에 시·도에 조치사항 바로 제출
 - ※ 제출 일정 및 기한은 시·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(각 시·도 안내 참고)

<비상저감조치 주요내용 - 사립대학교>

- **노후차량 운행제한** :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차량(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)
 -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차량(예외 등 세부사항) 및 단속 시작 시기 등이 시·도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시·도에 관련 계획·세부사항 문의 및 업무협조 철저
 - ※ 단속 시작시기(가스저감장치 설치신청 시 미단속) : 서울, 인천(2.15 예정), 경기(3.5 예정)
 - 특히 각 대학교는, 통근버스, 통학차량, 관용차량 등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확인(emissiongrade.mecar.or.kr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입력 후 등급 확인)
 -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할 경우, 시·도에서 안내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(지원금) 신청, 차량 교체 등 후속조치
 - ※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, **공공·민간 노후차량 모두 운행이 제한되며** 운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

- 붙임 1.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(제정안)_배포 (대용량 첨부).
2. (환경부 보도자료)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 1일부터 안내 시작. 끝.

교 육 부 장 관



수신자 고등교육기관전체

행정사무관 김태훈 학교안전총괄 전결 2019. 1. 21.
과장 유정기

협조자

시행 학교안전총괄과-624 (2019. 1. 21.) 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(어진 / www.moe.go.kr
등)

전화번호 044-203-6893 팩스번호 044-203-6971 / goodkth19@korea.kr / 비공개(5)